

등록번호	토지관리과-18963
등록일자	2014.11.14.
결재일자	2014.11.14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도로명주소사업팀장	토지관리과장	도시관리국장	
이선영	김관순	노영빈	전결 11/14 이진형	
협조				

상세주소 부여 및 홍보 추진계획



도시관리국
토지관리과

상세주소 부여 및 홍보 추진계획

단독다가구주택 및 여러 건물이 하나의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건물군에 대한 개별건물 위치안내, 우편물 전달지연 등 주소생활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상세주소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구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상세주소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I 큰 거

- 도로명주소법 제2조 제8호, 제8조의4, 제16조
- 건물군 상세주소부여 추진 독려[서울시 행정과-25722호(2014.10.27.)]

II 추진배경

- 상세주소를 사용할 수 없는 다가구주택 등 거주자의 생활불편
- 개별 주소를 사용할 수 없는 건물군의 주소생활 불편해소 필요
 - 하나의 동일주소 사용으로 우편물의 수취·전달지연 및 오배송 증가
- 건물군 내 정확한 위치안내로 긴급상황시 신속한 대응 가능
 - 복잡한 건물군 내에서 개별 건물에 대한 위치안내가 어려워 긴급 상황 시 정확한 신고가 어렵고, 응급기관은 신고 건물을 찾기가 곤란

추진계획

■ 추진기간 : 2014. 11. 17. ~ 2015. 02. 28.

■ 부여대상

-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, 다가구 주택 등
- 교육연구시설, 공공업무시설, 공장 등 여러 건물이 하나의 도로명 주소로 부여된 건물군
- 우리구 건축물 현황

[단위 : 동, KAIS기준]

계	단독 · 다가구	근린생활시설	전통시장	비고
9,359	4,217	5,133	19	2013년 1차 선도지역 지정 : 73동 (다가구주택 43동, 근린생활시설 30동)

○ 부여대상 건물군 현황

계		교육연구시설		공공업무시설		공장		의료시설		기타	
건물군수	동수	건물군수	동수	건물군수	동수	건물군수	동수	건물군수	동수	건물군수	동수
27	220	8	77	3	18	1	7	1	14	14	10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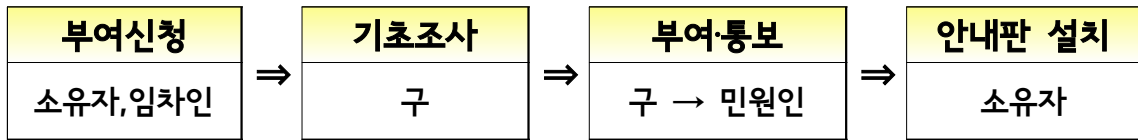
○ 대상범위

- 건축물대장에 동·층·호가 등록된 집합건물(세분화)
- 건축물대장에 동·층·호가 등록되지 않은 건물 등

■ 부여기준

- 건물번호가 부여된 건물의 동이 다른 경우
- 건물등의 외벽에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경우
- 건물 등의 내부에서 복도·계단을 이용한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경우

부여절차



○ 건물군의 상세주소부여 업무처리 지침[안전행정부]에 따라 부여 처리

상세주소제도 홍보

- 구소식지, 홈페이지 등에 상세주소제도 안내
- 단독·다가구주택 등 거주자 및 건물군 부여대상에 신청안내문 발송
- 홍보 리플릿 배포
 - 구 민원실, 동주민센터 민원창구에 홍보물 비치
 - 관할우체국, 등기소,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적극 홍보 안내

IV

추진 일정

- 2014. 11. 17. ~ 2014. 12. : 관련기관 협조 요청 및 기초자료조사
- 2015. 01. ~ : 현장조사 및 상세주소 대상자 파악
- 2015. 02. ~ : 상세주소 신청 안내문 개별 발송

V

기대 효과

- 단독·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해 서민들의 생활편의 증진
- 상세주소 제도의 안정적 정착으로 우편물 수령 등 주민 편익 제고
- 정확·상세한 주소체계를 구축, 위치찾기 편리·사회비용 절감 등

- 건물군 상세주소부여 지침에 의거 매 분기별 건물군 부여실적 보고
- 매분기 익월 7일까지 제출[서울시]
- 상세주소 신청안내문 우편발송 : 민원여권과
- 구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에 주민홍보 : 공보실, 전산정보과
- 상세주소 부여에 따른 주민등록 정정 시행 : 동주민센터

붙임 : 1. 건물군의 상세주소부여 업무처리지침[안전행정부]
2. 상세주소부여신청 안내문(안). 끝.